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3. 9. .

발 의 자 : 장하나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시스템통합(System Integration)을 중심으로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해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발주자-대기업계열업체-중견업체-중소업체-인력파견업체 등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에서 5단계 이상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 실정임. 다단계 하도급 구조 및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은 소프트웨어산업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역행하는 것임.

하도급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구체적인 조항을 담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하도급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하도급 관련 규율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방지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발주자, 도급, 수급인, 하수급인 등 하도급 관련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9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 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별도의 장(안 제3장의2)을 신설함에 따라 하도급의 승인 조항을 삭제함(안 제20조의3 삭제).
- 다.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 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도급계약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26조의2).
- 라. 수급인은 도급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하도급에 관한 제한 사항을 둠(안 제26조의3 신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발주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0.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하도급 받은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 받은 자(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재하수급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0조의3을 삭제한다.

제3장의2(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도급 및 하도급

제26조의2(도급계약의 원칙) ①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④ 하도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3(하도급의 제한)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급인이 도급받은 사업의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사업의 일부를 재하도급하는 경우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상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95미만으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할 수 없다.

④ 수급인이 도급받은 사업의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사업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과업의 내용, 하수급인 선정방식, 하수급인의 과업수행능력, 하도급계약금액 세부 산출내역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가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과업의 내용, 하수급인 선정방식, 하수급인의 과업수행능력, 하도급계약금액 세부 산출내역 등 하도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5장(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벌칙

제37조(벌칙) 제2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계약을 표준하도급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사업자(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제외한다)
2.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의3제5항에 따른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발주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u></p> <p>10. <u>“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u></p> <p>11. <u>“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u></p>

<신 설>

<신 설>

제20조의3(하도급의 승인)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1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하도급 받은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 받은 자(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재하수급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삭 제>

제3장의2 도급 및 하도급

제26조의2(도급계약의 원칙) ①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④ 하도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3(하도급의 제한)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사업금액의 1

<신 설>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급인이 도급받은 사업의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사업의 일부를 재하도급하는 경우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상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95미만으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할 수 없다.

④ 수급인이 도급받은 사업의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사업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과업의 내용, 하수급인 선정방식, 하수급인의

과업수행능력, 하도급계약금액
세부 산출내역 등 하도급계획
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
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에 속하는 회사가 하도급을 하
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할 과업의 내용, 하수급인 선정
방식, 하수급인의 과업수행능
력, 하도급계약금액 세부 산출
내역 등 하도급계획을 미래창
조과학부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장 벌칙

제37조(벌칙) 제2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신 설>

여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계약을 표준하도급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교부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사업자(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제외한다)

2.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의3제5항에 따른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